등록번호	교통행정과-48335
등록일자	2015.10.2.
결재일자	2015.10.2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운수지도팀장	교통행정과장	안전건설국장
이현경	**김종필**	고영자	10/02 **백기운**
협 조	자동차등록팀장 **정서란**		

2015년도 하반기 불법튜닝 및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단속 계획

안전건설국

교통행정과

2015년도 하반기
불법튜닝 및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단속 계획

불법튜닝 및 무단방치 자동차 등 안전기준위반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과 도시환경 저해, 교통질서 문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차량에 대한 일제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함.

Ⅰ 관련근거

- 자동차관리법 제26조(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)
- 자동차관리법 제29조(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) 및 제34조(자동차의 튜닝)
- 자동차관리법 제43조(자동차검사)
- 자동차관리법 제48조(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)
-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
- 서울시 택시물류과-27425(2015.10.1.)호 관련

Ⅱ 단속개요

- 단속 기간 : 2015. 10. 5. ~ 10. 31.
- 단속 방법
  - 관내 다중집합 장소 및 취약지역 특별단속반 편성 순찰 및 단속
  -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및 불법이륜자동차 단속
  - 서울시 외곽경계 및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합동(기동)단속
    (2015.10.13. (화) 14:00 마포구 성산북단 초소)
  - 장기체납 세무자료를 이용하여 대포차 등 적출

▩ 단속반 운영

○ 서울시 유관기관 합동단속

- 단속반 구성 : 1개조 10명

  (서울시 , 중구 , 교통안전공단 , 경찰 , 검사정비조합)

○ 상시 단속 : 중구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 3명

○ 특별 단속 : 운수지도팀장 외 6명(2개조, 1일 2회 이상 순찰)

- 관내도로, 뒷골목, 주차장 등 불시순찰 적발
- 유관기관 협조요청(관할 경찰서 등)

○ 단속반 편성 (2개조 7명)

소 속	총 괄	조 편 성		주요순찰지역	비 고
교통행정과	운수지도팀장 김 종 필	A조	김계영, 홍종원, 전현정	-주택가 -학교 주변 -공원 주변 -도로상	1일 2회 이상 순찰
		B조	이현경, 김성두, 정병윤		

Ⅲ 단속대상 및 행정조치

▩ 단속 대상

○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

○ 무단방치 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

○ 무등록 자동차 및 타인명의 자동차

(말소후 계속운행, 임시운행기간경과, 무등록번호판 위·변조차량, 대포차 등)

○ 미등록(불법) 이륜자동차 등

▩ 주요 단속내용

○ 불법튜닝 및 자동차안전·부품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

- 불법 전조등 및 제동등을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
- 소음기(머플러) 불법구조변경 및 자동차에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
- 일반형 화물차 불법구조변경(적재함개조, 탑 설치 및 탱크로리 장착 등)

○ 무단방치 자동차(이륜차 포함)

- 도로, 주택가,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
-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
-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

▩ 행정조치

○ 적발차량은 즉시 관할 시·군·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

○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관련 정비업소도 추적 조사 후 행정처분

V 행정사항

▩ 주민홍보 강화

○ 언론보도, 중구 홈페이지,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게재

○ 관내 정비 · 매매업소 홍보 안내문 게시

○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

○ 무단방치 자동차 발견 시 중구청 교통행정과에 서면 또는 유선 신고

불법튜닝 및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

- **단속기간 : 2015. 10. 5. ~ 2015. 10. 31.**
- **단속대상 : 불법튜닝 및 무단방치 자동차 등(안전기준위반 차량)**
- **처분내용 :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**

붙임 1. 단속대상 및 처분규정 1부.
2. 불법자동차 신고 안내문(안) 1부.
3. 불법명의 자동차(속칭 '대포차') 신고 안내문(안) 1부.
4. 무단방치 자동차 주민신고 안내문(안) 1부. 끝.

【붙임1】

단속대상 및 처분규정

주 요 위 반 내 용	처 분 기 준	관 련 법 규 (자동차관리법)
《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사례》 – 고광도 방전식 전구(HID) 전조등 불법설치 – 소음기(머플러) 불법구조변경 – 화물차 창유리 임의설치 및 격벽 불법제거 – 방향지시등, 후미등 색상 불법변경 – 불법등화장치 부착 – 철재 스포일러(spoiler) 또는 철재 범퍼 불법부착	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, 100만원 이하 과태료	법 제29조 (자동차구조 및 장치) 법 제34조 (자동차의 튜닝)
《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사례》 –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– 번호판 훼손한 경우	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, 100만원 이하 과태료	법 제10조 (자동차등록번호판) 3항, 5항
《무단방치 차량 위반 사례》 – 일정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 용도로 사용행위 –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–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	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	법 제26조, 제81조제8호
《이륜자동차 위반 사례》 –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자 (신고대상 : 최고속도 25km/h 이상)	100만원 이하 과태료	법 제48조 (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)

※ 썬팅 단속 : 경찰소관(도로교통법)

【붙임2】

불법자동차 신고 안내문(안)

불법자동차 신고 관련 홍보자막

○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는 중구청 교통행정과에 신고합시다.

○ **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.**

○ **불법튜닝 및 무등록 자동차 일제단속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.**

○ 정기검사 미필자동차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됩니다.

○ 대포차로 인한 피해는 나에게 돌아옵니다.

○ 자동차의 무단방치, 불법튜닝, 무등록 운행을 하면 **형사처벌**을 받게 됩니다.

○ 내가 버린 자동차 공해되어 돌아온다.

○ **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을 하지 맙시다.**

【붙임3】 **불법명의 자동차(속칭 '대포차') 신고 안내문(안)**

불법명의 자동차 (속칭 '대포차') 신고하세요

▧ 추진배경

○ 불법명의 자동차(속칭 대포차')는 자동차 명의자와 점유자가 서로 달라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써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,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 있어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▧ 신고대상 및 방법

○ **(신고대상)**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, 교통범칙금,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

○ **(신고장소 및 방법)** 서울중구청 차량등록창구에서 접수가 가능하며, 인터넷(www.ecar.go.kr)으로도 접수가 가능 합니다.

○ **(구비서류)** 신분증 지참, 신청서는 **서울중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**(☎02-3396-6239)에 구비되어 있습니다.

▧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

◆ 서울중구 자동차등록 창구	◆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(www.ecar.go.kr)

【붙임4】 무단방치 자동차 주민신고 안내문(안)

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주택가 및 도로상에 방치된 자동차를 처리(폐차)하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부탁드립니다.

▧ 신고대상

○ 무단방치 자동차 및 이륜차

-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
- 도로, 주택가,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
-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등
- 그 외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

▧ 신고내용

○ 방치장소(번지 및 인근의 큰 건물명을 상세하게 신고)

○ 방치기간

○ 차량정보(차량번호, 색상 및 차명 등)

○ 신고인 연락처(신고인 개인정보 보호)

▧ 신고처 및 신고방법

○ 중구청 교통행정과(☎02-3396-6223) 및 각 동 주민센터로 서면 또는 유선신고